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688

2019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제출일자및제출자 : 2019년 5월 24일 이병도 의원

2.회부일자 : 2019년 5월 30일

3.상정일자 :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6월 17일 상정· 의결】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병도 의원)

## 1.제안이유

- 서울시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위・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음.
-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·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을 신설함.(안 제6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####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

○ 본 개정안은 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사회복지시설의 위·수탁기관 변경 시,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규정이 부재한 바,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 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음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 가. 위·수탁기관 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2(고용승계) 시장은 사회 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 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 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는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립 사회복지 시설의 위·수탁기관이 변경 될 경우에 기존 종사자의 신분의 불안정 문제가 상당하였음.

- 집행부는 그동안 「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」 으로(참고자료 1 참조)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협약서 등을 통해 종 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왔음.
- 다만 집행부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조례상 명시할 경우, 위·수탁기관 기관 변경사유가 다음과 같이 "① 지도감독에 따른 중대한 행정처분(임원해임, 시설장교체) ②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수탁해지 위탁 반납한 경우"에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.
  -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위의 사항과 관련한 종사자에 대해서 무조건적 고용승계를 보장해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, 집행부의 의견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사료됨.
- 종사자의 신분의 안정은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 여겨짐.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 중 '종전1'이라는 표현은 종사자의 대상에 대한 변경된 위·수탁기관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'기존'으로 대상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<sup>1) -</sup> 종전(從前): 지금보다 이전, - 기존(旣存); 이미 존재함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미비되어 있었던 위·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종사자가 고용 불안을 해소 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관리지침의 운영 사항도 동일하므로 추가 재정적 부과도 없는 사안임.
-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종사자 고용안정에 대한 공공이 이를 인지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의지의 표상이라 보여지며, 종사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통해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사회적으로 미칠 긍정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 중 '종전2)'이라는 표현은 종사자의 대상에 대한 변경된 위·수탁기관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'기존'으로 대상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,
- 본 개정안은 시립 사회복지시설의 위·수탁기관 변경 시에 적용되나, 향후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·수탁기관 변경 시중대한 행정처분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사항이 있는 종사자를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하여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.

<sup>2) -</sup> 종전(從前): 지금보다 이전, - 기존(旣存); 이미 존재함

(단위 : 명, %)

							(한기	• 6, 70)
	시설명 소재		전   수탁기관	현 수탁기관	수탁기간	계약체결 시		6개월 거리 ㅎ
부서명								경과 후
		소재지				종사자 인위	고용승계	고용승계
							인원	인원
						ਹਿਦ	(비율)	(비율)
지역 돌봄 복지과	시립신목 종합사회 복지관	양천구	사회복지법 인 명화복지재 단	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	2016.11.1 ~ 2021.10.31	29	28 (96.5)	25 (86.2) ※3명 기간만료퇴 사
어르신 복지과	시립고덕 양로원	강동구	영원한도 움의성모 회	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	2016.3.5. ~ 2021.3.4	26	25 (96.2)	25 (96.2)
	시립수락 양로원	노원구	진각 복지재단	청 보 보 동 산	2019.1.1. ~ 2023.12.31	22	21 (95.5)	6개월 미경과
	시립영보 노인요양 원	용인시	천주교말 씀의성모 영보수녀 회 유지재단	대한불교 조계종사회 복지재단	2016.1.20 .~ 2021.1.19	44	43 (97.7)	43 (97.7)
	시립중계 노인전문 요양원	노원구	(사복)성민	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	2019.3.1. ~ 2024.2.29	166	164 (98.7)	6개월 미경과
장애인 복지 정책과	시립장애 인영농직 업 재활시설	남양주 시	(사복)한국 재활재단	(재)푸르메	2019.3.1. ~ 2024.2.28	3	2( 66.6)	6개월 미경과
	시립 평화로운 집	은평구	서울가톨 릭사회복 지회	(재)대한 구세군유지 재단	2019.1.1. ~ 2023.12.31	85	85 (100)	6개월 미경과
장애인 자립 지원과	시립서울 장애인복 지관	강동구	(재)영원한 도움의 성모회	(재)푸르메	2018.2.28 .~ 2023.2.27	89	86 (96.6)	86 (96.6)
자활지 원과	은평의마 을	은평구	서울가톨 릭사회복 지회	(재)대한 구세군유지 재단	2019.1.1. ~ 2023.12.3 1	118	116 (98.3)	6개월 미경과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참석위원 찬성 9명, 반대 0명】

Ⅶ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688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혜련, 봉양순, 김기덕, 김제리,

오한아, 김경영, 권수정, 김화숙, 김정태, 김소양, 이영실, 한기영,

권순선, 김종무, 김동식 의원

(15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위·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음.
-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·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을 신설함.(안 제6조의2 신설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・구조문 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고용승계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2(고용승계) 시장은 사회
	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
	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
	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
	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
	<u>다.</u>